

귀하의 가게가 인도에 있는 스탠드나 부스(또는 테이크아웃 노점)에서 과일, 야채, 청량음료, 사탕, 또는 꽃을 파는 형태입니까?

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시면 조사관들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파악하고, 위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상점은 일반 소매점 조사 체크리스트(General Retail Inspection Checklist)를 준수해야 하며, 이는 체크리스트 끝에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

귀하의 편의를 위해 각 요건(Requirement)에는 관련 법률 및/또는 규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KEY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 인용과 기호를 설명합니다.

| K | E, | Υ | | |
|---|----|---|--|--|
|---|----|---|--|--|

NYC 법령: NYC 행정 법령 RCNY: 뉴욕시 규칙

§: 조항

| 요건 | | 요건을 만족하고 | |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표건 | | 교단을 단독하고 계십니까? | | | |
| 면허 | | 71104771 | | | |
| 1 | 귀하가 과일, 야채, 청량음료(냉장, 향미 또는 탄산, 비알코올 음료), 과자(캔디, 케이크, | □ Øl | | | |
| | 페이스트리), 아이스크림, 얼음 또는 꽃 등을 귀하의 매장 밖 인도에서 판매하고 있다면, | | | | |
| | 반드시 DCA <u>노점(Stoop Line Stand)</u>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| | | | |
| | NYC 법령 §20-233(a) | | | | |
| 2 | 모든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DCA 면허와 불만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. | □ 예 | | | |
| | 6 RCNY §1-03(a) | | | | |
| 3 | 노점은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임대될 수 없습니다. | □ 예 | | | |
| | NYC 법령 §20-237(c) | | | | |
| 판매월 | 판매될 수 있는 상품 | | | | |
| 4 | 과일, 야채, 청량음료(냉장, 향미 또는 탄산, 비알코올 음료), 과자(캔디, 케이크, | □ 예 | | | |
| | 페이스트리), 아이스크림, 얼음, 꽃 등은 노점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. | | | | |
| | | | | | |
| | 6 RCNY §2-70.2(g) | | | | |
| 5 |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노점이 귀하의 매장에서 200피트 이상 떨어져 있다면, 매장 내에서 | 여 | | | |
| |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노점에 진열할 수 있습니다. | | | | |
| | NYC 법령 §20-235 | | | | |
| 규모 | | | | | |
| 6 | 노점 폭은 4피트 이하여야 합니다. | □ 예 | | | |
| | 참고: DCA의 허가를 받으면 스탠드 폭이 최대 5피트가 될 수 있습니다. | | | | |
| | NYC 법령 §20-237(a), NYC 법령 §20-237(b) | | | | |
| 7 | 보도 폭이 16피트 이상인 경우, 커브부터 스탠드 끝까지 측정했을 때 스탠드 앞 보도의 폭이 | 여 | | | |
| | 9½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. | | | | |
| | NYC 법령 §20-237(b) | 1 | | | |

2018년 7월 1/2



| 요건 | | 요건을 만족하고 계십니까? | |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8 | 노점 또는 진열대의 어떤 부분도 7피트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| 여 | | |
| | NYC 법령 §20-237(a) | | | |
| 외관 | 관 | | | |
| 9 | 노점의 양 끝과 앞면은 목재나 기타 재료로 만든 울타리나 칸막이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| 이 예 | | |
| | 합니다. | | | |
| | 6 RCNY §2-70.2(a) | | | |
| 10 | 밀폐된 영역(예: 상자, 크레이트 등) 외부에는 물품을 저장, 진열 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. | □ 예 | | |
| | 6 RCNY §2-70.2(a) | | | |
| 11 | 계절 차양은 12월부터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걸이형 차양은 그 재질이 유연한 | 여 | | |
| | 비닐이나 캔버스 천이여야 하며, 그 길이가 스탠드 폭을 넘어 보도 방향으로 12인치를 | | | |
| |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| | | |
| | 6 RCNY §2-70.2(a) | | | |
| 12 | 스탠드는 그 외부 재질이 부드러워야 하며, 통행인의 옷을 손상시키거나 통행인에게 상처를 | □ 예 | | |
| | 입힐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. | | | |
| | 6 RCNY §2-70.2(a) | | | |
| 13 | 음식이나 꽃 진열 시 물이나 얼음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보도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| 여 | | |
| | 주의해야 합니다. | | | |
| | 6 RCNY §2-70.2(d) | | | |
| 14 | 고객들은 매장 밖 노점에서 산 물품에 대해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. | □ ØI | | |
| | 6 RCNY §2-70.2(e) | | | |
| 15 | 노점이나 보도에서 과일, 야채, 등의 제품을 세척, 손질, 다발 포장 또는 진열 준비할 수 | 여 | | |
| | 없습니다. | | | |
| | 6 RCNY §2-70.2(f) | | | |



42 Broadway New York, NY 10004 Nyc.gov를 방문하여 "사업 툴박스(Business Toolbox)"를 검색해주십시오

소비자 보호국 (Consumer Affairs)

> 국장 Lorelei Salas

> > **311** (212) NEW-YORK (뉴욕시 외부)로 연락해주십시오

이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그 내용이 열거적인 것이 아니며, 그 어떤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. 뉴욕시 사업체는 모든 관련 연방, 주 및 시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사업체는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규정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.

2018년 7월 2/2